

스승의 날 기념 국회 정책 토론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

-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

일시 : 2023년 5월 15일(월)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다함께 행복한 교육,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석, 김홍걸,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유기홍,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 눈'

스승의 날 기념 국회 정책 토론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

-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

일시 : 2023년 5월 15일(월)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다함께 행복한 교육,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석, 김홍걸,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유기홍,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 눈'

■ 스승의 날 기념 국회 정책 토론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

-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

■ 환영사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4

■ 축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1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12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14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은희1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1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2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정복.....2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2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26

○ 정책토론회 세부일정 및 차례

구분	순서	소요시간	비고	
1부	사회자 인사 및 진행 안내	15분 내	사회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의원 등 인사말	10분		
	사진 촬영	5분		
2부	[발제1] 김현수 (성장학교 별 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외국 사례(일본, 홍콩 등에서의 “괴물 부모, 교사 사냥꾼” 등)를 중심으로)	20분	좌장 이현주 (연세대)	29
	[발제2] 왕건환 (전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 팀장)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등 한국 교육 실태 보고	20분		37
	[토론1] 박상수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학교폭력피해자 가족 협의회 자문변호사)	10분		45
	[토론2]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	10분		50
	[토론3]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여성청소년과)	10분		55
	[토론4]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준비위원)	10분		58
	[토론5] 한희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	10분		61
	[정리 및 종합토론] 발제자 및 토론자 등	20분		

■ 부록 - 교사노동조합연맹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수집 사례

1.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실태 사례보고67

2.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글77

환영사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반갑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강득구 의원님과 조희연 서울교육감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님, 유기홍 교육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공동주관해 주시고 정성스럽게 축사를 보내주신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 교육위원회 권은희, 도종환, 강민정 의원님과 이원욱, 민병덕, 문정복 의원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을 사랑하고 애쓰며 헌신하신 선생님들께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칙에 따라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하였음에도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여 고통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이런 우리 교육 현실을 알려드리고 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유아가 먹지 않겠다는 간식의 포장지를 뜯어주지 않았다고 보호자가 병설유치원 교사인 저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실인데도 보호자는 특수학생 자녀의 말만 듣고 교사 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는 증거 확인도 안 하고 즉시 교사인 저를 교체하였고 교감 선생님께서 증거도 없이 저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고하게 아동학대를 당하시고 고통을 호소하신 분들의 사연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교사가 교실에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당

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교사들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최소한만 수행하는 행위가 어찌 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고성 아동학대와 빈번한 악성 민원을 방치한다면 학교 교육은 더욱 황폐화되고 교육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전문가로서 무엇보다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 교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실에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환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4월, 54,446명의 전국 교사들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무고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입법을 해달라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이렇게 절박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더 이상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주는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국민과 국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4월, 강득구 의원실에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 조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아직 교육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정부 각 부처,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교육 현장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신명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여, 교실에는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환희로 가득차 수업과 교육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용 서

축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국회 강득구 의원님을 비롯하여, 강민정·권은희·김민석·김홍걸·도종환·문정복·민병덕·민형배·유기홍·유정주·이원욱·이학영 의원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르치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현주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 토론자,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침해 유형도 복잡화·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문제 삼는 아동학대 신고도 증가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3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기준이 교육현장에 편향되게 적용되어 곤란을 겪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으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축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의 7만 조합원 달성과 기념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승의 날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멋진 5월에 교사노동조합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 연령대별 노조단위별 세분화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어 더 의미깊게 느껴집니다.

2017년 3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시작된 교사노조연맹은 6년 만에 7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원노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30대 교사가 약 70% 가까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희망을 봅니다. 자율적인 분권형 조직 안에서 젊은 교사들의 새롭고 역동적인 활동들을 기대합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사노조연맹과 저희 의원실은 상생과 개혁의 파트너로 지내왔습니다. 학교 현장의 소중한 사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왔습니다. 법안은 물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우리 교육계에 처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신 김용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맹 관계자님들, 지역별, 단위별 위원장님들과 관계자분들의 지원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는 15일,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으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되찾기 위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함께 개최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당하는 교실 현장은 바로 잡

아야 할 사안입니다. 심각하게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위기관리에 놓인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교육에 쌓인 현안이 많습니다. 교육은 눈앞의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가 아닌, 교육의 논리로 백년대계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교육은 국가의 100년을 가늠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하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합니다. 교사노조연맹에서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교사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 곧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휘되는 교사노조연맹 조합원 선생님들의 집단지성과 실천하는 양심의 힘을 믿습니다. 저 또한 그 힘으로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사노조연맹의 다양한 활동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 득 구

축사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입니다.
한층 짙어진 초록빛 잎새와 꽃들이 어우러져 눈부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특히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있지만 스승의 날을 통해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주신 내빈 여러분 및 교육가족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가·사회적 책무성과 아동보호 체계, 법과 제도 등이 강화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건들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유관기관인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의 연계·협조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체계 확립을 통해 학대 피해학생의 안전을 도모하여 안전한 학교·사회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에 대한 유기와 방임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학교와 교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수업방해·교육활동 침해·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나 징계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교

육활동 중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범죄행위자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사이의 반목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보호와 교권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양날의 검이 아닌 공존의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구성하기 위한 두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 상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위협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여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중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학생 및 보호자는 아동학대범죄행위자로 신고하여,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 및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통해 교육활동 피해교원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와 민·형사상의 소송비용 지원, 치료·심리상담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교육활동 배상책임 지원을 통해 손해 배상을 지원하여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 보호자와 교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공존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강득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교육애와 열정으로 흔들림 없이 교단을 지키고 계시는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축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열리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학교에 대한 비판, 교사에 대한 비판이 너무 쉽게 이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도로서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제목이기도 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는 미국의 교육운동가인 파커 파머의 책의 제목(The Courage to Teach)이기도 합니다. 파커는 훌륭한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이 공포감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지식을 매개로 하는 생산적인 상호교류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이나 학부모들의 과도한 개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와 같은 사례가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개별 학교와 교사들로서는 학부모들의 이런 민원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처럼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학부모의 경우에는 다양한 압력을 학교와 교사에 미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교실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스승의 날에 열리는 오늘 토론회에서 일선의 선생님들의 고민에

공감하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여전히 학교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고 제도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교직을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의식 때문에 선택했으며 자기를 학교로 이끌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교실에서 발견과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사와 학교를 보호할 수 있는 논의가 오늘 토론회에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 민 석

축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입니다.

오늘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강득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성장학교 김현수 교장선생님, 전 교사노동조합 왕건환 교권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입니다.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한 이유는 민족의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신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민족에게 가르침을 주어 존경받는 것처럼 스승도 똑같이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스승을 대하는 현실은 매우 서글프기만 합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와 관리자들이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로 인해 학생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전교사노조가 대전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20명 가운데 53.8%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험이, 64.4%가 아동학대 빌미로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당하게 신고당한 교사는 직위해제, 병가, 휴직 등으로 학교 수업에서 배제되며, 이로 인한 교육 공백이 사회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당하지 않은 교사 역시 무고성 신고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압박감에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지도를 할 수 없

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환경을 결국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해외에서는 교실에서 학생이 수업 방해로 했을 때 지도하는 방법을 법령이나 학교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기본교육법에 규정했고, 미국은 구두 경고 후에도 반복되면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위한 정책적 제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논의된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 기 흥

축사



권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권은희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교사들의 권리 신장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강득구 의원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김현수 성장학교 교장 선생님, 전 교사노조 연맹 왕건환 팀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 상담, 생활지도 그리고 행정업무까지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이 순간에도 많은 교사분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현장의 교사들은 무고성 신고와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법적으로 아동학대를 목격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지만, 무고죄로 신고를 당하거나 법적 소송에 시달리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신고로 인해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 업무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들은 교육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퇴직한 근속 연수 5년 미만 교사는 1850명, 5년 이상 15년 미만의 퇴직 교사는 2832명에 달했습니다. 교권 추락과 업무 과로로 인해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사들의 업무 면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소송·신고·협박에 시달리는 현장의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교폭력 대응 업무, 아동학대 예방업무 등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다듬어야 합니다.

저 역시 현장의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직무수행에 따른 면책 규정 신설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은희

축사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육을 위한 고민과 실천으로 바쁘신 와중에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으로부터 정당한 교육 활동 되찾기’를 주제로 열립니다. 아이들은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심각한 수업방해, 교육활동 침해 및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나 징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교사들의 합당한 생활 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무고되어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받은 교사들은 학교 및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병가 또는 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교육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교사들은 깊은 좌절과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다른 교사들에게도 ‘나도 신고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어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어렵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다시 아이들과 학교 교육 현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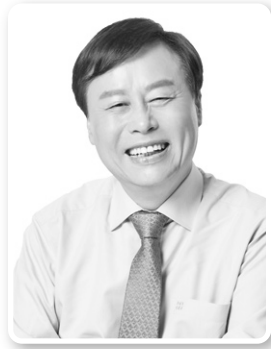
교사들이 펼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와 행정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 사회가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현장 경험과 이론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도출된 합의가 제도와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오늘 토론회의 결과물이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위해 참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 민 정

축사



도 중 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도중환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주신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석, 김홍걸,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유기홍,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국회의원님과 국회 ‘약자의 눈’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무엇보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교사 노동조합연맹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을 교육 분야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와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교육개혁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교사들의 권리와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수업방해 행위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 자체를 막기 위해 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신고하는 일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도 증가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 교사 개인의 삶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만큼은 제대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교사로서 존중받고, 온전히 아이들

의 성장과 수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진정한 교육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추가한 교권 보호 제도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더욱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현 제도의 부족한 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들 바탕으로,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회도 진정한 교권 보호와 회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전국에 계신 교사 여러분 모두 다른 어떤 날보다 위로받고, 사랑받는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교사의 자부심을 평생 간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 모두를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 종 환

축사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강득구 의원님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좌장을 수락해주신 이현주 연세대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 주실 김현수 성장학교 별 교장 선생님, 왕건한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 팀장님, 각 분야 토론 및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학생들의 교육과 발전을 책임지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교사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교권 보호 관점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고소를 중대사안으로 바라보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 간의 건강한 관계형성과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다양한 대책과 지원 마련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여

러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학계 및 전문가들의 발제를 비롯해 교사와 학생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평화로운 학교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 정 복

축사



민 병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민생회복을 최우선을 하는 민생투사, 금리투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민 병택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도 하루가 다르게 여름 날씨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고,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기에 맑은 하늘과 청량한 바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장은 학교에서 만들어집니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이면서 인격을 형성해 가는 사회화 과정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출생율의 감소로 귀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자녀 교육열기가 되어 학교에까지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아이 잘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다른 아이도 잘 되길 바라는데 상식일 겁니다. 그러나 경쟁사회에서 아이나, 학부모나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방법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간섭이 아이에게는 과도한 스트레스이며, 대인관계가 약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의 욕심보다는 아이도 인격체인 만큼 스스로의 삶과 방향을 찾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의 전문가는 선생님입니다.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신뢰를 기

반으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 인권신장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노력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이 학교현장에서의 거센 요구가 된 것도 현실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사회가 바로 선다고 합니다. 오늘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 교육 실태를 돌아보는 토론회 자리인 만큼 많은 해결점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교육으로 일으킨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교실이 망하면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발제자분들과 교육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바입니다. 민병덕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 병 덕

축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강득구 의원님을 비롯한 보좌진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가르침을 위한 권리, 학생은 학습을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서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두 권리는 대립하는 성격도 아니며, 제로섬(zero-sum)의 구조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분명 선생님과 학생이 윈윈(win-win)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부모가 선생님을 상대로 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은 교육을 병폐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녀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라는 칼릴 지브란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 사이의 상호 배려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모두 특별한 존재인 만큼, 특정 개인만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은 사라져야 합니다.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유지하고, 학생이 쾌적한 학습환경에서 교육 받으려면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 협조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로 학교가 선생님과 학생이 즐겁게 생활하는 공간으로 회복하는 계기

가 되길 바랍니다.

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에 함께한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원 욱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외국 사례 - 일본, 홍콩 등에서의 “괴물 부모, 교사 사냥꾼” 등 중심으로)

김 현 수

(성장학교 별 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I. 괴물 부모 (몬스터 부모)의 기원과 개괄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권위주의와 과잉보호에 기반한 자녀 양육을 말한다.

이런 부모로 인해 다양한 불평과 비합리적 요청을 받는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몬스터 부모의 문화적 영향은 그 후 홍콩에서도 유명해졌다.

일본과 홍콩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 몬스터 부모라는 용어는 무코야마 요이치라는 교육자가 먼저 사용하였고
- 일본 TV 드라마로 몬스터 부모가 시리즈로 만들어지면서 더 유명해졌다.

이 드라마는 학생들의 부모가 종종 학교 업무와 교사 교육을 방해하는 여러 실제 상황을 보여주었다.

도쿄도 교육청에서는 괴물 부모를 다루는 핸드북도 만들어 교사들에게 배포한 적이 있다. 문제는 이런 몬스터 부모가 한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었다는 사실이다.



2008년 7월-9월까지 일본 후지 TV에서 방영된 일본 드라마
 - 괴물 부모에 맞서서 일하는 변호사와 교사의 이야기, 11회,

** 몬스터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

- 과잉,
- 권위주의
-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치
- 자녀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음
- 높은 성적, 좋은 학교 성적 - 필요에 따라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 딱딱한 일정, 강력한 통제, 부모 강요, 부모 직업 강요
- 사람들 앞에서는 자녀를 신처럼 떠받치거나 대접할 것을 요구한다
- 막상 자신은 집에서 거침없이 자녀를 막 다룬다

** 몬스터 부모의 학교 개입

- 말로 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개입과 통제가 있어왔다
- 자기 자녀만 특별하게 봐주기
- 곤충에 물리지 않게 하기
- 앞줄에 세워주기

- 발표시켜주기
- 밥 빨리 먹여주기
- 청소에 참여하지 않기
- 달리기 시키지 않기
- 마치 교사를 자신의 하녀 마냥 여기며, 자신의 자녀만 제대로 봐줄 것을 요구한다

II. 괴물 부모의 정의와 특성

** 일본 언론에 보고된 혼한 괴물 부모들의 요구 사항

“내 아이가 학교 청소에 참여하게 하지 마십시오. 청소부를 고용하십시오!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보통 매일 방과 후에 학교를 청소합니다]”

“왜 학교 입학식에서 벚꽃이 피지 않았습니까?”

“내 아이가 왜 혼자 있게 합니까? 친구들과 같이 있게 늘 아이를 붙여주세요.”

“내 딸은 들판에 가는 바람에 햇볕에 타서 왔습니다. 우리 아이의 피부를 원상복구 해놓으세요.”

“내 딸은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니 창가 좌석에 두지 마십시오!”

“학교 급식은 정말 아이들에게 맛이 없는 음식이에요”

“우리 아이가 먹기 전에 ‘이타다키마스!’ 라고 말하게 하지 마세요! [“Itadakimasu”는 문자 그대로 ‘겸손하게 받는다’는 의미이며 대부분의 일본인이 먹기 전에 사용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에 비유 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종교적 의미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학교에 치료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내 아이가 벌레에 물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다시는 곤충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 아이에게 눈에 띄는 악기를 주세요. 왜 다른 아이에게만 그런 악기를 주나요!”

“우리 아이는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밥을 천천히 먹게 내버려주세요”

“우리 아이 사진이 왜 이렇게 없나요? 수학 여행을 다시 다녀오세요. 그리고 사진을 잘 찍지도 못하는 담임 선생님을 교체해주세요!”

** 괴물 부모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관행 :

- 1) 교사는 내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
- 2) 학교에서 내 아이는 1등 혹은 잘 하는 아이여야한다.
- 3) 내 아이는 항상 옳다.

- 4) 내 소중한 아이를 다른 인간들이 혼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5) 내 아이가 잘못했다면 그건 학교나 교사나 다른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못 했기 때문이다.
- 6) 교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아니면 교장이 전적으로 책임 져야 한다.
- 7) 권력이나 돈을 사용해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다

**** 괴물 부모의 특성 5가지**

- (1) 자녀의 삶을 과도하고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한다.
- (2) 자녀가 타인과 어울리거나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3) 무엇보다 학업 결과 혹은 경쟁의 결과만 강조한다
- (4) 무조건 자기 자녀 편을 든다
- (5) 빈곤과 무능을 조롱하고 멸시한다.

**** “괴물 부모”는 학교에서의 자녀 훈육이나 돌봄에 대한 큰 피해의식을 가진 그룹이다.**

- 1) 교사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지속적으로 결점을 찾고
- 2) 교사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비합리적이고 통제적이고 일방적인 제안을 하는
- 3) 공격적이고, 불평불만이고, 이기적인 부모 그룹이다.
- 4) 자녀가 정상적인 대우를 학교에서 받지 못하고 결국 특권적 대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고 특권을 제공받지 못하면 해당 학교와 교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다.
- 5)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평을 넘어 사냥하는 사람이다. 교사 사냥꾼이라고 불리고, 뺑하면 담임 교체나 교사 교체를 요청한다

III. 괴물 부모 탄생의 사회학적 이해

1. 일본 사회 학자들의 견해

1) 귀한 자식 함부로 키울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본다.

2) 내 자식 좋은 학교에서 멋지게 다니게 하고싶다.

교육 경쟁과 학벌 문제가 겹쳐져서 더 괴물 부모 역할이 나타났다고 본다

3) 좋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좋은 부모 노릇 못한 것이다.

경쟁과 입시에 따른 온갖 경쟁의 결과로 자식의 학력이 부모 탓이라고 사회가 인식하면서 더 과열 되었다.

2. 홍콩의 언론에서의 분석

괴물 부모들이 부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결과 일 수 있다.

- 1)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변화
- 2)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요구
- 3) 부모들의 교육 수준과 고임금 직업의 증가
- 4) 교사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 가속화 및 교육 불신의 증가 - 교사들의 능력, 교육과정 등 말하지 않고 주장하지 못하면 제대로 가르치거나 보호하지 못한다
- 5) 귀한 자녀, 한 자녀 가족의 증가
- 6) 부모들의 지나친 걱정 -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걱정
- 7) 공동체 문화의 쇠퇴와 극단적 개인주의의 부상
- 8) 소비주의의 부상 : 교육 구매자 혹은 교육 소비자, 소비자로서의, 고객으로서의 요구
- 9) 학력주의, 능력주의,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영향 - 돈이면 되고, 돈으로 실력을 만들 수 있고, 실력으로 권력이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은 경쟁이다.

3. 미국, 호주 비평가들의 분석

- 1) 저출생
- 2) 육아 부담론
- 3) 잘못된 교육열과 경쟁사회
- 4) 부부의 문제 - 아내 없는 남편, 남편 없는 아내 현상
- 아시아 부부들은 모두 자녀를 위해 살지, 서로를 사랑해서 살지 않는다 -->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동일시

**** 괴물부모는 왜 죄책감이 없는가?**

- 본인이 이기적인이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 엄청난 부정 : 자신의 욕구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부정의식을 떨치기 어렵다

IV. 괴물 부모의 자녀들

괴물 부모를 둔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스스로는 자신을 돌볼 수 없음
- 2) 낮은 감정 지수
- 3) 낮은 스트레스 회복력
- 4) 대인관계 능력 부족
- 5) 강력한 충동성
- 6) 즉각적인 만족감
- 7) 심각한 부모 의존성 : 스스로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알지 못함,
- 8) 책임감 부족

** 몬스터 부모의 아이들

- 순종과 의존 - 부모없이 할 줄 아는 것이 없음
- 반사회적 성격 ; 부모의 반사회적 방법을 배우고 따라함

** 괴물 부모의 결과

- 청소년들의 자해와 자살의 증가
- 괴물 부모 자녀들의 반사회적 범죄 증가
- 왕주병, 공주병 으로 자라난 아이들의 무기력, 성인이 된 어린 아이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보호와 돌봄의 증가
- 부모가 건강하게 지내는 동안에는, 혹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실패없고, 스스로 도전하는 것 없는 부모에 의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사는 인생 :
- 스카이 캐슬 : 경쟁에 의한 정글에서의 삶

V. 괴물 부모에 대한 해결법

1. 사회적 대응

- 반대 여론의 형성과 무례한 학부모에 대한 도덕적 고발
- 일본 후지 TV 드라마 이외에도 후지 TV 교양 및 쇼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보도와 고발을 지속적으로 시도
- 학부모들의 새로운 자녀 양육 문화 교육
- 학부모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 팀패런팅, 협동양육 :
- “혼자 잘난 척하면서 큰 아이는 절대 잘 될 수 없다”
- 몬스터 패런트 자녀들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 사건 :
 - 1) 몬스터 패런트 자녀들의 부모 살해
 - 2) 몬스터 패런트 자녀들의 자해 및 자살의 증가
 - 3) 몬스터 패런트 자녀들의 마약사범 및 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건강상의 폐해 소개

2. 교육계의 대응

- 몬스터 패런트 대응 매뉴얼 제작
- 자신의 아이만 특별하게 다루어주기를 바라는 교육의 폐해와 그런 부모의 행동에 대한 문제를 부모들에게 교육, 교사들에게 교육
- 대응 매뉴얼
 - 1) 아이에게 교사의 말을 듣도록 하려면 부모가 교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
 - 2)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학부모가 협조해야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이 더 좋다
 - 3) 몬스터 패런트 대응 담당자의 전문적 대응

3. 학부모들의 대응

- 특권 문화를 만드는 일부 학부모 혹은 학부모 집단에 대한 건강한 학부모들의 대응력 강화
- 건강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소통과 대화 강화 : 교사회와 학부모회가 함께 만드는 교사-학부모 연맹 강화
 - 특권적 요청에 대한 대응 조례나 규칙 만들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한국 교육 실태 보고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 서울 경기기계공업고 국어교사)

1. 공권력의 실추,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증가

지난 4월, 천안의 한 경찰서에서 촉법소년으로 보이는 학생이 경찰에게 발길질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유포되었다. ‘경찰이 무능하다, 촉법소년 범위를 축소하라’ 등의 댓글이 달렸지만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들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경찰은 조금만 강하게 제압하여도 과잉진압으로 비난과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촉법소년을 입건해봤자 약한 처분만 받을 것이 분명하다.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진정시키고 녹화한 후 신고해야 한다.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우려 때문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영상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현실을 잊기 쉽다. 해당 학생은 특별한 조치 없이 훈방되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대부분은 조용히 넘어가게 되기 쉽다. 교직의 경우 이런 영상이 유출되면 교사를 징계한다. 작년에 생활지도법 촉구를 위해 앞장섰던 김학희 교사를 전북교육청에서는 징계하고자 하였고, 전국적인 반발에 의해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다.

과도한 공권력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화와 함께 공권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그런데 이는 범죄피의자를 보호하며, 이들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전과 자조차 통제하지 못하여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일가족이 참변을 겪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역시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무마되고 말았다.

우리와 같은 일을 겪은 일본은 2016년 한해에만 폭행당한 교사가 8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칼에 찔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직접 당하기 전까지는 남의 일 뿐이다. 교육청에서 공식 집계한 교사 폭행 건수가 연간 2백여 건인 것으로 보아, 은폐축소 무마된 건은 훨씬 많을 것이다.

미국의 일부 사립학교는 귀족화되고, 공교육은 슬럼화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의 공교육은 해가 갈수록 교사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교사의 의원면직, 명예퇴직, 교대생의 자퇴가 급증하며 심지어 2023학년도 대입에서 교대 13개 중 11군데가 사실상 미달이 되어 아무나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한때 최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했던 교대와 사범대는 옛말이며, 교사의 질과 교육의 질이 추락할 것임이 자명해졌다.

유럽의 교육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심각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청소년 자살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만 오랜 사회 발전 속에 공권력의 대응 체계가 우리나라보다는 발달해 있다. 적극적으로 교사를 지원하려고 하지, 징계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통제하고 있지는 않다. 교육청의 대응이 늦어, 교원단체나 교사들의 자구책으로 폭행 현장 대처 연수가 이제 막 개발, 보급되고 있을 뿐이다.

2. 모든 경우 결말은 교사 징계 또는 무력화

필자는 전국생활부장 포럼의 운영진으로 2013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매일 수십 건의 학폭과 교권침해 사안을 수천 명의 교사들과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 왔다. 예전에는 교사들의 노하우 공유 정도였겠지만, 학폭법 도입 이후에는 교사가 학폭 사안 해결 중 징계나 처벌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필자가 교사 연수를 할 때 2018년부터 도입 퀴즈로 내며 조금씩 수정해온 문제를 살펴보자.

한 학생이 몹시 흥분해, 어떤 학생을 구타 중이다. 주변의 몇몇 다른 학생들은 구경 중이다.

생활부장/학폭담당/담임교사의 적절한 반응은?

0. 책걸상을 밀어 큰 소리를 내서 싸움을 멈추게 하고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1. 다른 학생에게 말리라고 지시한다.
2. 내가 중간에 끼어서 말린다.
3. 구타를 멈출 때까지 때리지 말라고 소리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 때까지 현장을 지킨다.
4. 우선호루라기 소리로 경고하며, 행동을 멈추게 한 후, 지원을 요청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2번을 택하겠지만, 수많은 현장 사례를 살펴보면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운 좋게 진정되면 다행이지만, 흥분한 학생들은 학폭 기록 생기부 기재 같은 건 생각도 안 나고, 교사들 조차 전혀 두렵지 않다. 난동부리는 사람을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것은 전문 훈련을 받은 2명 이상의 사람이 해도 쉽지 않다. 그래서 학생의 도움을 받다가 학생이 다치면 교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사가 직접 나서서 말리다가 학생이 다치면 교사는 과잉진압과 학생 폭행 가해자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은 교사가 대신 맞는 선택을 하고 있다.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해야 겨우 휴가를 낼 수 있다. 피명이나 출혈 정도로는 병조퇴조차 쉽지 않다. 여러 학생들 앞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교사까지 구

타당했다는 점은 교사뿐 아니라 많은 피해학생들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긴다. 제압 훈련도 못 받은 교사가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멀리서 소리로 진정시키고 경찰 출동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이 역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장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너무나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불안할 뿐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교사 18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PD수첩 아동학대 교사편을 기획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선택지 0번의 방법으로 싸움을 말리고 지도하는 과정이 발미가 되어 선생님은 1년간 시달리다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7년간 부장업무에 모범공무원상을 받고, 많은 학부모들이 의지하며, 그 선생님 덕분에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제자들까지 나설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였다. 선생님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3천2백만원의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무지막지한 아동학대 처벌법의 존재를 절감하게 된 것은 2017년 버스 용변 사건부터이다. 승진 계획도 없는 고경력 교사가 6학년 부장이라면 누가 봐도 희생한 것임을 교사들은 안다. 전교생 수학여행 통솔 과정에서 한 실수로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가해자가 되어 해임되고 10년간 아동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구명운동이 일어나 간신히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교사들의 사기는 확실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 해에는 존경받던 다른 선생님이 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자살하기도 하였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처럼, 아동학대 혐의에 걸려들면 최소 몇 달에서 몇 년 간 해임과 형사처벌에 불안하며 지내야 한다. 마녀사냥처럼 마녀이든 아니든 재판에 올라가면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된다.

3. 아동학대 처벌법은 제기능을 하는가?

지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전망 확보” 국회토론회(경기교사노조)¹⁾에 부연하여 실태를 살펴보겠다. 이 법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로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초중고 교직원은 전체 40만여 명 중 1만 명 가까이 된다. 민간기관이 아닌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게 된 2020년엔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으로 숫자가 줄어들었으나 다시 증가 추세이다. 그런데 담당자들의 체감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정되지 않았어도 의심으로 신고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로 시달리는 사이에, 아동학대 치사 등 심각한 아동학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출생률이 급감하고 있음에 비추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 가정에서 영아 대상으로 발생한다.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학교 교육을 마비시키고 있다. 80% 가량의 신고가 초중고생에게 집중되어 있다.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놓다 보니 주변부의 문제들로

1) 교사노조연맹TV (2023.4.25.) <https://youtu.be/vitrBROP1mU>

인해 본질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하라는 부모의 잔소리를 신고하는가 하면, 공무원 1명이 휴일 퇴근도 없이 연간 100여 건을 다루기도 한다. 순환보직의 일반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다보니 전문성을 쌓기도 어려워 제대로 된 해결과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사의 재학대 건수는 0에 수렴하는데도 그 가까운 인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수업 방해, 교권 침해 학생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퇴출되거나 많은 개선이 필요한 교사들은 신고 대상에서 비껴가기 쉽다. 신고 대상은 대부분 학생을 소신껏 지도하려던 교사들이다.

4. 학교의 불행 - 학생, 교사의 자살률 급격히 증가

PD수첩에서 2년차 초임 교사의 자살 사건을 다루었다. 욕설로 수업방해하던 학생을 복도에 나가게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자 이를 빌미로 소송을 당하고 혼자 괴로워하다 스스로 투신한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특이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오래 다뤄왔던 입장에서, 교사의 자살 역시 너무나 흔하여 관심거리가 되기 어렵다. 쉽지 않지만 과거에 몇몇 인정 사례가 있었으므로 교사노조에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었고 해당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오랫동안 세계 1위였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의 자살률이 2015년부터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엔 10-19세 중 매일 1명꼴로 발생하였고, 올해는 SNS 자살 생중계나 학교에서 흥기난동 후 투신 등 새로운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14년에도 교사의 자살률이 급증하는 문제가 다뤄졌다. 2011년에만 31명이 집계되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면직도 급증하였다. 심지어 교실에서 목매달아 사망하여 학생들에게 발견되는 사건이 몇 년에 한 번씩 지방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다. 2021년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직 중 자살, 과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교사가 100명 이상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3년 전 정년을 맞이하는 해에 자살한 교사의 순직을 최초로 인정하기도 했다.

5.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범죄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되는 교사들

교육활동 침해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교육부, 2022)만 보아도 교사들이 겪는 교육활동 침해는 대표적인 유형만 살펴봐도 심각하고 다양하다. 과거에는 체벌이나 정학 퇴학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쉬웠지만, 지금은 온갖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교육을 포기하게 되기 쉽다. 몇 년 전부터 돌던 '망하는 교실 구조'라는 도표를 보면, 지도가 어려운 학생에게 실수하면 결국 담임교체되고 기피

학년이 되는 악순환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끝나면 아주 다행이라고 한다. 자존감의 상처는 입지만, 기피하던 담임에서 벗어나기라도 한다.

교사뿐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 심각한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감정노동은 훨씬 더하다. 이에 따라 바디캠까지 도입되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는 이런 지원조차 없어서 자구책을 나눌 뿐이다. 행정안전부의 민원 대응 매뉴얼을 서울시교육청 실정에 맞게 제작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만 보아도, 교사가 갖가지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철밥통에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성 인력 취급은 어떻게 견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조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공권력이 되고 마는 현실을, 일반적인 학부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PD 수첩에서 다뤄지기도 했던, 학부모에 의한 교실 교사 폭행 사건의 양상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2021년 발생한 사건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속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그 자녀를 두둔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학교에 악성민원을 일으키던 학부모 앞에 학교는 수년간 속수무책이었다. 갈수록 심해져서 기피학년으로 아무도 맡지 않으려던 상황에서 자원하여 담임은 맡은 교사들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고 말았다. 가해학생의 담임교사는 결국 병가를 썼고, 옆반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학폭 신고 후 교실에서 수업 중 아이들 앞에서 난입한 성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학교폭력 가해와 심각한 교권침해를 무마하려는 악성민원인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 학폭 피해학생들 중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했지만, 일부 학생은 자신을 지켜주려던 선생님을 위해 법정까지 나와서 증언을 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다른 지역청에 비해 교권보호 체계를 뒤늦게 마련하여 선생님은 현재까지 자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생긴 정신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해 공무상 질병휴직 중이다. 교사를 학교폭력의 방관자로 몰더니, 적극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교사를 교육청과 법규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결국 대부분의 교사는 자신이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대부분의 교사는 이런 기나긴 소송이 두려워서 대응을 포기하고 질병휴가나 휴직, 전보를 선택한다. 현실 개선을 위해 나서는 교사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고, 교사의 입을 막기 위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징계하려는 교육청에 의해 더욱 절망한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한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지만, 신고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된 사례가 많다. 결국 그 교사가 수업하던 교실은 다른 교사로 계속 교체되며 영망이 된다. 직위해제는 관련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실시해야 할 것이다.

6. 아동학대 신고를 피하는 방법

3월에 성추행 무고를 당한 선생님이 직위해제 후 무혐의 결정으로 12월이 되어야 복귀하였다. 여학생의 섭섭함으로 교사는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셈이다. 신고자는 어떤 처벌도, 재발 방지 조치도 받지 않는다. 교사도 폭행당하지 않으면서 신체학대나 성학대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교사가 결국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과 1~2m 정도 책상 등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절대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것뿐이다. 방임과 학습권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업 방해 학생이라도 교실에 함께 있어야 한다.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상황에서나 긴급구호조치가 가능할 뿐, 심각한 수업방해나 교사 폭행 상황에서조차 교사가 피신해야지 학생을 분리하기 어렵다.

그렇게 버티더라도 정서학대 혐의는 정말 피해가기가 어렵다. 교사의 모든 대화를 녹취하며, 교과서나 매뉴얼 등 결재받은 공식 문건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 이상의 지도를 하기 어렵다. 이른바 학생이 기분 나쁘면 아동학대범죄가해자 혐의가 생기고, 전담공무원-경찰-검찰-재판의 과정을 최소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각오해야 한다.

정서학대의 기준에 대하여 일부 판례만 있을뿐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었는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

가정에서의 부주의한 지도 사례

무시

“또그만게 뭘 안다 그래.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지마.”

“(아이가 요구하는 일을 거절하며) 그건 네가 결정 할 일 아니야. 엄마, 아빠가 허락해줄 때 해.”

비난, 조롱

“너 왜 자꾸 밤에 오줌 싸는거야. ○○가 자꾸 오줌 싸니까 엄마 힘들잖아.”

“엄마, 아빠 빨리 회사 가야 해. 너 때문에 회사도, 어린이집도 늦었잖아. 양말 신고라니까, 왜 안 신고 돌아다니는거야!”

“신발 제대로 신고랬지! 너 거꾸로 신고 다니다 넘어질 줄 알았어.”

거짓협박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듣고, 울음 안 멈추면 벽보고 서있게 할거야!”

“(밥 안먹는 아이에게) 밥하고 반찬 골고루 다 먹어야 TV 보여 줄거야!”

차별

“동생도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데, ○○이는 왜 혼자 정리 못 하는 거야.”

“너가 형이니까, 동생한테 장난감 양보하는 거야.”



방 및 대응 매뉴얼(2021, 보건복지부)을 참고할 수 있다. 부주의한 지도가 은밀하고 반복되며 고의성이 생기면 아동학대 위험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많은 예시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0~1세 아이에게 '이러면 안 되지? 울면 안돼. 자꾸 울면 미운사람 돼요. 그만 울어요. 똑!'라고 말하면 교사는 '무시, 거짓협박, 비존중'의 아동학대 의심 혐의가 생긴다. 그에 따라 권리존중 지도의 예시를 보여준다. '정서 공감, 대안 제시' 등의 방법이다.

물론 후자의 방법이 더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런 것으로 행정력과 수사력이 소모되는 사이, 연간 40여 명의 아동은 폭행과 방치로 사망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부주의한 지도 사례(57쪽)를 보면 이것들 모두 아동학대 혐의가 된다. 이런 사례가 시비 걸리면 교사는 아동학대범죄가해자로 신고당하고 직위해제, 검경조사를 받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셈이다.

7. 지금 우리 학교는?

교사는 직접 폭언 폭행당하거나 징계 처벌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진다. 공교육은 친절할 민원 처리자, 말단 공무원, 콜센터 민원처리 업무자로 교육은 서비스직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종이니, 고객님 모시듯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 수업방해 학생과 학폭 가해 학생을 무한친절로 대한다.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상황에서는 가해학생에게도 친절히 기초면담 후 결과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낸다. 위원회는 얼마나 변호사비용을 쓸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당연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가해자는 더욱 기세등등해진다.

교사는 견디기 힘들면 휴가나 휴직, 면직한다. 그 자리를 기간제교사나 신규교사가 충원한다. 교사 지원률은 갈수록 떨어진다. 당연히 국가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 공교육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희박해진다. 학생의 학력 신장과 성장은 교육특구나 사교육에 기댄다. 공교육은 미국처럼 슬럼화된 다. 아동학대치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 소신껏 나서는 교사들은 결국 외친다. 탈출은 지능 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의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 해결해야 할 난제가 너무 많다. 최소한의 대책을 요약한다.

실태1. 교사가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당하는 폭언, 폭행, 갑질, 괴롭힘 폭증

실태2. 가정과 어린이집 위주의 법령과 매뉴얼을 학교에 무리하게 적용하여 아동보호 기능과 학교 교육 모두 무력화

실태3.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업 방해 교권 침해 학생 등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성민원, 무고성아동학대 신고 남발

대안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준하는 업무 중단, 전환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조항 명시

대안 2. 학교 아동학대 민원 또는 학대 의심 상황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기준에 따라 처리되도록 법령 및 매뉴얼 개정 : 아동학대 조사 시 학교 등 교육전문가의 의견 및 학교폭력, 교권침해, 수업방해, 악성민원 상황 등 무고 정황 필수 반영

대안 3. 무분별한 검경 조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에 대한 기준 수립, 교육활동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시책 수립 시행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소년법에 따라 경찰과 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과 법무부 인력 부족,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 역시 무분별한 남발을 막기 위해서 교내의 아동학대 전담기구와 지원청 심의위원회 성격의 기구가 필요하다. 교육을 무력화시키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몇 달~몇 년의 행정 수사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 아동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가정과 어린이집에 집중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무고와 학교 현장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현

박상수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학교폭력피해자 가족 협의회 자문변호사)

I. 문제제기 - 교실로 찾아온 법원과 경찰

지난 2018년 진행된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으로 기능이 이관되기 전에 학교에서 학내폭력 사건을 다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올라간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3만2632건에 달했다. 5년 전인 2014년(1만9521건)에 비해 67% 증가한 수치로 2015년 1만 9968건,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¹⁾

학교폭력 재발건수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학교폭력 문제의 양상도 집단화, 흉폭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 발생을 목격한 이후 방관했다는 비율은 2017년 20.3%에서 2018년 이후 30%대로 급상승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학교폭력 건수와 재발률은 여전히 큰폭으로 증가하고, 방관자 비율도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소외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증가는 발생 건수와 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된 이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종래 교육 자치적 측면에서 해소되었던 학교폭력의 문제가 행정법상 처분으로서 법적 문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교 현장의 문제들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결과로 초래되었는데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단 2년간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심판과 소송이 두배 늘어난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쟁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1) 학교폭력 특별교육 실효성 의문...가해학생 재발건수 오히려 늘어, 아시아경제, 2020.10.5.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법이 제정되고, 2021년 아동학대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아동학대법 소급적용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후 교사와 학부모 간의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양상이다.

2012년 이후 근 10년간 학교는 수사기관과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장이 되었고, 교사와 학교 등 교육 당국은 쟁송의 상대방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학교 현실로 인해 일선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해야 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II. 사례 1 :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무고죄로 고발당한 교사

교사 A는 학교폭력 전담교사로서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에 따라 교육청 학폭위 개최가 이뤄지도록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학폭 조사 자체에 불만을 품은 가해자 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교감 선생님을 찾는 등 생떼를 부렸고, 결국 자신의 자녀가 학폭위에 가게 되었다고 교사 A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형법상 무고죄는 아래 형법 조문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도 성립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사에 대해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교사의 신고의무는 법정 의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행하는 학교폭력 신고나 학폭위 개최 등을 위한 업무는 모두 법령에 따른 의무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해당 사안에서 수사기관인 경찰은 사건을 입건하여 해당 교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지만 학교폭력 전담교사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사까지 당한 경험은 해당 교사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 사건이었다.

Ⅲ. 사례 2 : 학교폭력 사실을 전해 들은 것만으로 명예훼손 공범으로 고발당한 교사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가한 B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자신이 사실은 피해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에 B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C학생의 보호자는 B학생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D를 찾아 B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달라며, B학생의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처분을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학생의 보호자는 B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이 퍼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C학생의 보호자와 담임교사인 D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범으로 고발하였다. 해당 사안에서 C학생의 보호자와 담임교사 D는 모두 입건이 되었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우리 형법은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데 오로지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는다.

해당 사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B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B학생이 재학중인 고등학생이 알게된 것이 담임교사 D에 의한 것이었는지와 이러한 사실이 전파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가 수사 기간 내내 쟁점이 되었다. 결국 C학생의 보호자와 담임교사 D에게서 사안이 전파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전파가능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되었지만 공익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B학생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처분 사실을 공지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교사와 학교 당국이 가해자 부모에 의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성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Ⅳ. 제언 - 처벌 만능주의가 아닌 회복적 사법의 실현 방안

학교폭력사건 발생시 엄벌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의 인플레이션을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그것이 딱히 균형잡힌 처벌과 불이익의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보니 새로운 모순에 의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처벌과 불이익을 인플레이션 시키면서 한편으로 학폭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남발을 방치하고, 불복 소송으로 시간 끌기를 방치함으로써 그나마 엄벌주의가 가져올 위하라는 순기능이 소멸되는 것이나 학생부에 절대 기재되지 않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과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폭위 처분이 가져오는 불이익의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엄벌주의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형법학의 흐름에도 동떨어진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형사법계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단순한 응보적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육의 목적이 더욱 큰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문제에서는 더욱 교화적 목적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형사법계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교화에 두는 교육형 주의 외에 범죄의 발생으로 변화하게 된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학교 사회를 범죄 발생 이전으로 되돌리는 회복적 사법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회복적 사법 이론은 가해자에 대한 교화의 범위를 확장하여 피해자와 주변 사회까지 치유하는 것을 형사법체계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교육적 목적이 강하게 요구되는 학교 현장에서는 보기에만 선명한 엄벌주의보다 회복적 사법 이론의 적용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적이며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도모하며, 한편으로 현장에서 학교폭력의 문제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입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1.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고와 조사 및 처분 주체의 분리

아동학대 사건에서 의사는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직역이다. 그러나 의사에게 조사와 처분 그리고 아동 보호의 의무를 동시에 지우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이 담당할 일이다. 이에 의사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를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편이다. 반면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달리 교사에게 신고와 조사 및 보호처분의 책임을 모두 지운다. 교사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고 면책요건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조사 및 보호처분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상당히 가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학교폭력 현장에서도 신고의 의무는 교사에게 부담시키되 조사는 SPO 등 수사기관이 보호처분은 소년법원 등의 사법기관이 역할을 나누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된다. 실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이러한 방식의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

2. 강제수사권이 없는 교사에게 조사를 위한 권한 부여

학교폭력 사건의 1차적인 조사기관은 아무리 제도가 변화해도 교사이다. 그러나 교사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있어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반면 교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교사의 조사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만이 생기고, 조사에 있어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조차 힘들다.

우리 법에서 행정부가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토록 그 권한을 담보할 제도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기 힘들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들은 임의조사를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조사에 모두 응한다. 그것은 바로 아래의 공정거래법 상 규정 때문이다.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러한 조사방해 규정이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효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학교 폭력 현장에서 교사의 조사행위에 대한 방해가 있다하여 이를 규제할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기껏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또한 행정법상 처분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으로 교사의 권한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 등에 있어 조사 기능을 수사기관 등에 이양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정거래법 상 조사방해죄 조항과 같은 벌칙 조항이 입법될 필요가 있다.

3. 담임 및 학교폭력전담교사의 처우 개선

현재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사건 등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담임 및 학교폭력 전담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많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전담교사는 저년차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담임교사 역시 기피 업무 중 하나가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적인 경험이 많고 노련한 교사가 사안을 사법적 해결의 대상으로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사들이 전담교사를 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 등으로 학생 1인당 태블릿 PC가 한 대씩 제공될 수 있을 정도로 물질 시설이란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교폭력 문제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학교내 사건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결 방법은 예방적이고 교육적인 해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들에 대해 유형별로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이 적절히 교육될 필요가 있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하” 기에 “법의 무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과 관련한 법제도는 지금까지 수차례 손질되는 과정에서 땀방식 처방으로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에 대해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

I. 들어가는 말

지난 3월 MBC 'PD 수첩 1365회',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프로그램(2023. 3. 7.)이 방영된 이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상담을 마칠 때쯤 교장님께서 "최근 MBC에서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점에 대하여 방송했는데 세상이 너무 조용하다."라고 말씀하였다.

이 교장님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왜 조용할까?

가해 혐의자를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아동학대 혐의자를 돕는다는 것은 말이다. 나아가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였을 때 어떠한 공적제도로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한 '아동학대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I. 교원안심공제제도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월부터 교원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안심공제제도를 시행하였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원안심공

제의 목적은 사안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교원을 사안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현재 이 교원안 심공제제도의 일환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민원을 받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생님들을 돕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선생님들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

가.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증가

2020년 한 해 동안 공제회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안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2021년에 17건, 2022년 28건으로 선생님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갑자기 증가하였다. 어떤 이유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된 것인지 그 원인을 알고 싶을 정도이다.

물론 공제회가 모든 아동학대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 통계로 일선 학교의 아동학대 전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제회에서 처리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 중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이 났다. 공제회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특별한 도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행위가 처음부터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결과가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죄로 처벌 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을 뿐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선생님들의 교육과 생활지도 등 일련의 행위는 언제든지 아동학대로 연결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학부모의 오해가 시작되고 갈등의 조짐이 보일 때 어떻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설명으로 학부모의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느냐 마느냐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현재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를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 시 대처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안심공제사업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시작될 때 이를 중재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감정의 악화로 인해 사안이 아동학대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런 중재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 된 교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나. 아동학대 신고 사안

사례 1,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께서 학생을 지도하던 중 들고 있던 볼펜으로 학생의 어깨를 툭툭 친 사안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였다.

사례 2, 다른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 학생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민 행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였다.

사례 3, 학생들이 수업 태도 등 규칙을 어겼을 경우 3일 동안 휴식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자리를 이동할 수 없다는 벌칙을 정하여 학급을 운영하던 중 벌칙을 당하게 된 학생의 학부모

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였다.

세 분의 선생님 모두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처음에는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될까?’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학부모는 본인의 자식들에 대한 문제이므로 어떠한 유형의 신체적·정신적 물리력 행사라도 아동학대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아무리 학생들 스스로 정한 규칙이라 하더라도 그 규칙이 누군가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가 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말이다.

위 사례 외에도 무고에 가까울 정도의 사안들도 있다. 그러한 사안들을 접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초기에 학부모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 보였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처벌될 정도의 학대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해도 어찌되었든 아동학대로 신고 될 경우 사안이 종결되기까지 선생님들이 겪게 되는 상황은 만만치 않다.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을 적지 않게 만나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금의 논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해결방안 검토

선생님들에 대한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를 줄이기 위하여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일부 몇몇 학부모들만의 문제로 여겨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문제제기하는 점도 있지만, 아동학대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생활지도를 하는 선생님들도 있다.

이에 금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방식을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개선하여 학부모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피해교원에 대한 회복 조치 강화

즉,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교권보호 위원회를 통하여 피해교원으로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교권보호 위원회를 통해 피해교원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 특별휴가 5일이 부여된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선생님의 경우 특별휴가 5일로는 심신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최소한 1개월 범위이내에서 본인이 선택 또는 권장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교사의 정신건강은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학대로 신고로 인해 박탈된 모든 손해의 복구 조치

한 선생님은 표창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많은 선생님들이 근무하기를 바라는 기관으로 전보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후 예정되어 있던 모든 혜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 무혐의 처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선생님들의 경우 예정되어 있던 혜택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신속한 아동학대 조사 및 결과 통보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검찰조사까지 통상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선생님들은 가슴 조리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사안 발생 시 선제적인 지원책 필요

아동학대, 직무유기 등의 고소를 당한 경우 또는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경우에 교사의 교육활동은 위축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학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안내 및 교육 등

교사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등 제3기관에 우선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선생님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 전파 확대 및 교육

현재 어떤 선생님들은 내가 하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에 생활지도에 대한 자기점검을 통해 오해 받을 상황을 피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IV. 결론

학부모와 학생 학교는 공동체여야 한다. 서로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협력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이러한 신뢰를 누가 깰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신뢰하여 우리의 학생들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옳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를 원망만 하고 있을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당하고

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미래다. 우리는 한 사람이 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서로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다. 학부모님, 신고 한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선생님도 교육방법에 대하여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우리 모두 한번만 더 생각합시다.

교권침해, 악성 민원 및 아동학대 부당 신고 현황과 문제점

김동규 경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여성청소년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및 아동학대 부당 신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뜻깊게 생각함

- 전체 범죄소년(14~18세) 검거는 '18년(66,259건) 대비 '22년(61,220건) 줄었으나, **촉법소년 및 초·중 학교 학교폭력 사건은 증가** 중으로,
 - 경찰도 소년 사건의 특수성 및 계도 조치의 어려움을 인지하고있어 **학교측에서 소년 사건 관련하여 개선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 공감함**

-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정서/성학대)은 가정 내 학대가 대부분으로 '15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 계기로 영유아 보육시설 내 학대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수사 역량 집중 중**
 - ※ 시도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만 10세 미만 및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며, 그 외 학대사건은 경찰서 여청수사(강력)팀에서 담당
 - 반면, **초·중·고 내 발생사건은 전체 대비 4% 내외에 불과**하며 학대행위자와의 분리 등 보호조치 필요성이 낮고 교사·학교장의 재량을 고려해 그간 **아동학대 발생유형 중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음**

〈아동학대 장소별 현황〉

※ '23년 경찰청 통계 참조

구분	총계	학교	학원	가정 내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종교시설	기타
22년(건)	11970	509 (4%)	203 (1.6%)	9973 (83.3%)	391 (3.2%)	71 (0.5%)	103 (0.8%)	9 (0.1%)	711 (5%)

- 경찰은 반복·은폐되기 쉬운 관계성 범죄(가정폭력, 스토킹 등)에 아동학대를 포함하고 '23년 경찰청 핵심정책과제에 '가정 내 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지정하는 등 강력범죄화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 기조
 - 특히, 아동학대는 이후 성인기까지 후유증이 남으며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 없는 피해자 특성상 학대 시, 그 피해 정도 및 재발위험성이 크므로 경찰에서 더욱 적극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
- ※ 형법상 폭행·협박과 달리 아동복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혐의 유무와 무관하게 법령상 검찰에 의무송치하여 2차적 판단을 받아야하는 등 절차 엄격
 - 학교 내 발생사건을 다르게 다루려면 ▲가정 ▲보육시설 내 사건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충분히 인지되어 법령·정책 등에 반영되어야 함

□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를 구축 완료했으나 아동학대 판단은 경찰 내에서도 애로사항 존재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 시 ① 112 신고 및 고소·고발 등 직접 경찰에 접수 ② 지자체 긴급전화, 상담센터 등 통해 지자체(아동보호전문공무원)에서 접수·자체조사 후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수사 개시
 -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경찰) ▲응급조치 및 분리조치 ▲아동학대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아동학대행위자' 조사 및 CCTV 등 증거수집을 담당
 - (지자체) ▲피해아동 조사 및 통합사례회의 등 거쳐 아동학대 여부 판단 → 경찰에 의견 제시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 사후 관리
- 아동학대범죄는 검찰 전건 송치사항이며, ▲고소·고발 시 즉시 수사개시 ▲입건 전 조사이더라도 피해의자의 경찰관서 출석조사 시 즉시 수사로 전환이므로 사실상 아동복지법 위반 시 수사는 필요
 - 수사 개시 및 종결 시 행위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이 원칙(범죄수사규칙 제46조)으로, 증거인멸 등 수사목적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예외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예외적 적용은 어려움
 - 단,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상 직위해제대상을 금품비위 등 비위행위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한하므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직위해제하는 건 해당 기관에서 법리 검토 필요
- 학교 내 아동학대 발생사건은 학대·훈육 기준이 명확치 않고 가정 내 학대와 달리 신고이력 등 현장에서 판단내릴 수 있는 요소가 적으며,
 - 학대여부 판단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주로 반영함에도 수사 진행단계에서 참고인 조사 등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지자체', '경찰-검찰-법원' 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발생

- 이에 '경찰-지자체'간 조사결과 공유 등 협업 고도화를 계속 진행 중

□ 아동학대 무고 수사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교사-학생 간 관계특수성 및 아동학대 신고 위축우려를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 「경찰수사규칙」 제111조상 경찰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 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 현 정부의 '무고죄 엄벌 및 거짓말 범죄 피해자 구제책 마련 공약'의 후속조치로서 경찰도 '21년 말, '22년 초 각각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시 무고판단 확행 강조' 공문을 하달하는 한편,
 - 분기별 1회 '무고의심사건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및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무고범죄 인지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
- ※ 검찰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의 규정」 개정('22. 9.)을 통해 '무고'를 사법질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

- 다만, 무고는 구성요건상 '허위의 사실'을 요구하므로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이 고소·고발인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될 시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 허위사실 신고 주체가 미성년자이며,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학대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객관적 사실에 반함'을 알고 무고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충분한 증거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 ※ 단순히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대판96도771), 법적 평가·의견의 오류가 있을 뿐인 경우(대판83도3245),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대판95도331) 등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

나도 아동학대 학부모가 될 수 있다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추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고등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 평범한 직장인인 최형욱입니다. 두 자녀를 키우면서 사춘기, 중2병의 위험을 넘어서면서 다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바라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평범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몇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2020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부부가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하여 당시 16개월이던 아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2020년 5월 25일과 6월 29일, 9월 23일 3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경찰에서는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차 신고에서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한 것을 두고 ‘미국식 수면 교육’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거나, 아이의 상처가 몽고반점이니 아토피성 피부염이니 하는 변명을 했으며 최후의 골든 타임이었던 9월 23일에는 2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의 체중이 1kg나 감소되어 있고 학대의 징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근 소아과에 데리고 갔고 소아과 의사 역시 아동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양부모는 양부모가 주로 다니던 병원에 방문하여 원장에게서 단순 구내염 치료만 받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 욕을 한 바가지도 모자라 몇 바가지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신고를 3번이나 했는데도 취장이 절단될 때까지의 폭력을 막지 못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타인의 가정과 철저히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내 옆집, 윗집, 아랫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관계도 알기 어렵습니다. 과거 한 동네 사람이라는

카테고리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며 그 닫힌 공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접하기 전에는 어딘가에서 벽을 타고 오는 아이 울음을 들을 때에도 그저 애가 우나보다 했는데, 지금은 혹시나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특정짓기도 힘들뿐더러 보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숨겨지고 가려진 가정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더욱 무서워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으며, 정인이가 그렇게 세상을 외롭고 무섭게 보내야 했겠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뒤집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 제목이 “잔소리하는 아빠, 신고할게요”였습니다. 제목에 놀라서 내용을 보니, ‘성적이 나쁘다며 욕을 했다’, ‘컴퓨터를 끄고 공부하라고 했다’와 같은 이유로 부모를 자녀가 직접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있고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많을 때는 하루 2~3건의 신고를 접수할 정도로 잦아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아, 나도 곧 우리 아이들에게 신고 당하겠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 그만하고 자라, 시험기간인데 공부 좀 해라’와 같은 말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누구나 했을 법한 말인데 이런 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신고한 경우는 경찰에서 즉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 경찰분들이 요새 참 바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억지로 우기면 분리조치까지 하고 부모는 학대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여야 하니 더욱 난감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제3자가 보는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런 잔소리만 한 정도면 무죄로 나오겠지라고 생각이 든 반면, 과연 앞으로 저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나라면 내 자녀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게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자식에 대한 배신감은 둘째치고 가장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서 잘 살기만 바라고 일해왔던 제 삶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3월에 PD수첩에 나온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40대 세대는 어릴 적 학교에서 많이 맞던 세대입니다. 숙제를 안 해오면 손바닥을 자로 맞아보기도 했고, 친구랑 싸우면 회초리로 맞기도 했습니다. 요즘 학교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동학대를 한다고 하니 ‘아직도 이런 교사가 있나?’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방송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받아쓰기를 해서 아이에게 창피를 주었다”, “반성문을 쓰게 했다”, ‘교사가 준비물을 주지 않는다고 욕을 해서 교실밖으로 내보냈다’, ‘레드카드 옆에 숙제 안 한 아이 이름을 붙였다’고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심지어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학부모로서 저는 오히려 받아쓰기를 안 해주는 담임선생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 반은 받아쓰기를 하는데, 안 하는 선생님이 직무유기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서 그 때, 받아쓰기를 하지 않았던 담임 선생님은 저런 학부모에게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나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다수의 저 같은 학부모와 아이들은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가정과 다르게 학생들이 많이 있고, 다른 반 교사들도 있어서 공개된 장소입니다. 받아쓰기를 해서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같은 반 학생 모두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 아닐까요? 반 전체가 받아쓰기를 했을테니까요. 반성문을 쓰게 된 것이 친구에게 욕을 해서였다면 욕을 한 학생은 어떤 방식으로 지도해야 하는 걸까요? 과거처럼 체벌도 못하고, 선생님이 타이르는 것만 가지고 피해받은 학생의 마음이 달래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신고하고 나면 정작 그 선생님은 다시 안 보겠다는 심산인가요? 담임을 신고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어떤 선생님이 애정으로 감싸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사도 사람인데, 저라면 자식이 신고했다고 해도 용서하기 힘들텐데, 나를 신고하거나 나의 동료로 신고했던 사람의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예수나 부처급 인성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내 자식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학교에서 그 많은 인원들을 감당해야 하는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까? 이제 아주 오래된 악습처럼 학생들을 미친듯이 때리는 교사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조차 신고하는 학생들이 그런 교사들을 집단으로 신고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있다면 진짜 아동학대 신고감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 아이의 정서를 생각한다고 교사를 신고해 버리면 남아있는 다른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한 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배웁니다. 그렇지만 자식 말을 무조건 믿고 싶은 것도 부모입니다. 선생님이 내 자식을 이빠해주면 좋겠다는 것은 어떤 부모든 가질 수 있는 욕심입니다. 하지만 다른 집 아이들은 제쳐두고 내 자식만 이빠해달라는 건 이기주의이자, 그 부모의 논리에 따른다면 '다른 학생들에 대한 또 다른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면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첫 번째 집단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혼자 키우면서 부족한 자녀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선생님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같은 현실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점점 멀어질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부모로서 우리 아이의 친구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예방 차원의 사전 조치를 위해 범 사회적 동참과 공유에 이를 수 있는 의제 발굴 및 그 확산에 공을 들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한희경 장학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1팀)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두 분 선생님의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로서 저는, 먼저 두 분 선생님의 주장을 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간단히 요약한 후, 두 분의 발제문 및 오늘 주제와 관련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김현수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시작된 ‘괴물 부모(몬스터 부모)’의 실태와 특성, 괴물 부모 탄생의 사회학적 이해, 미국과 호주 비평가들의 분석, 괴물 부모에 대한 사회적 대응, 교육계의 대응, 학부모의 대응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발제문에 나타난 바로는, 김현수 선생님이 어떤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일본의 괴물 부모 사태를 소개하고 미국, 호주 등 국외 전문가들의 반응과 일본 국내의 대응 현황을 보고 해주신 발표로 보입니다.

왕건환 선생님께서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매우 광범위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우선 관련 통계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분석하여 침해 유형별로 정리해 보여주신 후, 이러한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과, 이러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해 학교와 교실이 망가지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점, 이에 따른 폐해는 최근의 교대 정시 입시 미달, 교사 정신질환이나 휴직 및 면직, 자살자 수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들을 동원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어떤 구조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교사는 교실 안팎의 교육적 개입이 자칫 사고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형사 처벌에 이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교육 활동에 소극적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의 아동학대 개념을 소개하시면서, 중대한 아동학대 예방에는 속수무책인 채 심각한 수업방해나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지도 및 징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범죄행위자로 신고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고, 그 결과 교사가 신고당할 것이 두려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고 진단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개념이 지나친 포괄성과 학대 기준의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교사노조의 요구를 인용해 몇 가지 중요한 보완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현 아동학대 예방 지침 등이 '신고 의무자'로서의 교사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교사가 부당하게 아동학대가해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교육활동 지침 마련이나 대응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단순한 상담을 넘어 적극적인 변호사 법률 지원, 치유·회복 지원 등 교육 당국 및 교육청(지원청)의 교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이 두 가지는 토론자도 공감하며 가장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 두 분 발제문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2023년 3월 모 방송국의 PD수첩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4인의 교사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례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주된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현행 기준으로 학교나 교원들에게 적용하면 완전히 엉뚱한 결론이 나와 버린다.’는 변호사 의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학교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상황이 불리해 지자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는 방편으로 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학교장이 ‘아동학대 의심시 신고 의무’를 다한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민원만으로 해당 교사를 신고하고 교사를 분리 조치하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 있던 교사가 자살에 이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교사의 지도행위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곧바로 형사사건화되고 더 이상의 중재 여지 없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위 4가지 사례는 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법적 개선, 제도적 개선, 사회적 개선 등 그 해결 방안이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수 선생님의 발제문에는 해결 방안이 사회적 대응, 교육계의 대응, 학부모의 대응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론 형성을 통한 악성 민원 부모의 도덕적 고발과 방송을 통한 새로운 양육 문화 공유 및 확산, 교육계에서는 부모 대상 올바른 자녀 교육 및 교사 대상 악성 민원 대처 교육, 학부모 차원에서는 건강한 학부모회 활성화를 통한 특권적 부모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 제정 및 부모-교사 연맹 강화 등이 그것인데, 우리 현실에서도 충분히 참조할 만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누군가가 나서서 주도할 필요가 있겠는데,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의 경우는 교원 단체를 비롯한 민 주도의 형태가 바람직해보이고, 교육계 및 학부모회 차원의 해결 방안은 교육 당국이나 교육청이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법적 측면에서의 개선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문제 조항의 개선 작업이 우선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관련 악성 민원을 겪고 있는 교육부 간의 협력 위에서 구체적 사례 및 정보 교류에 기초한 문제 조항의 추출, 법 분야 전문가 검토, 개선 조항 도출 등의 절차가 적절할 것입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 조항 중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주요 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향
<p>제10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중략) …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p>	<p>학교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문제점] ▶제10조/제63조: 는 ‘의심’만으로 ‘즉시 신고 → 과태료’에 이르도록 단순하고도 과도하게 규정한 조항 ▶제10조: 학부모가 ‘교사가 정서학대를 가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것을 ‘의심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신고’할 가능성 큼</p>
<p>제11조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p>	<p>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p>	<p>▶제11조/제12조: 위 ‘의심 상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교사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해 강제 격리되고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짐으로써 학교와 교실에서는 비교육적 상황이 연출되어버림</p>
<p>제12조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략)…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중략)…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p>	<p>현장에 출동한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즉시 응급조치</p>	<p>▶제11조: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체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접수와 조사, 학대 여부 판단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을 ‘학교 내 아동학대 전문가’로 보기는 어려움</p>
<p>제6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중략)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p>	<p>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학교장에게 과태료 부과</p>	<p>[개선 방향] 학부모 민원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아동학대법(사안처리 시스템)은 근본적인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함. 적어도 “현행 아동학대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에 적용하며 교육활동 및 학교 내의 관련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여야 다룬다.”와 같은 법적 한정 조항이 필요</p>

법적 측면의 개선 작업에서는 특히 주요 개념의 명확성과 엄밀성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왕건환 선생님의 발제 문에도 나와 있듯이, ❶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정서 학대’ 개념 같은 경우는 악의적 의도만 먹으면 어떤 교사든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내몰 수 있을 만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도 모호합니다. ‘신체 학대’나 ‘방임’과 같은 다른 핵심 개념들도 추상성이나 모호성은 마찬가지로입니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선 작업에서 반드시 연동시켜 이해해야 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의 ‘직위 해제’ 관련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왕건환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❷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 2항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 개념이나 성추행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한 악의적 부모에 의한 교사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아래 표 참조).

국가공무원의 직위 해제 관련 주요 내용	
관련 조항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중략) ...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문제점] ▶악성 민원임에도 그로 인해 교사가 형사 사건 기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직위 해제를 당할 수 있음 [개선방향] ▶악성 민원이 형사 사건 기소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도록, 형사 사건 기소 전에 악성 민원 여부에 대한 엄밀한 판단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역시 연동시켜 개선이 필요한 법률입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처벌법의 한계에 대응하는 보호 장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정도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❸현행 초·중등교육법(2022년 12월 27일 개정)에 비해, 오히려 개정 이전의 초·중등교육법이 더 나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개정 전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하여 학교장의 징계권과 지도권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에서도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징계권과 지도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견 없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에게 생활 지도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학생 징계 관련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 시기	관련 조항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021.03.23. 타법개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문제점] ▶개정 전에 비해 개정 후의 법령에서는 교사가 다양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이라는 생활지도 활동을 오히려 삭제하였음.
2022.12.27. 일부 개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개선 방향]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되살리되, 현장의 다양한 생활지도 사례를 바탕으로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추가적인 여지를 두는 문구도 삽입할 필요가 있음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교원 대상 치유센터나 관련 연수 지원 등이 있지만, 왕건환 선생님의 발제문에서도 지적하고 계시듯이 일부 교원들은 그것을 '책임회피성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교육 당국 및 교육청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교사들의 다양한 현장 고충을 경청하고 실질적 해결을 돕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 센터 이상의 전담 부서를 교육청에 설치하고, 고충 청취에서 법률 지원(사안 처리 중 교사의 변호사 동행 지원 포함), 재정 지원, 치유 지원에 이르는 원스탑 지원 센터를 가능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악성 민원 사례를 접하면서 교사들은 '사고 나면 모두 뒤집어 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교사들의 교육적 실천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교육 활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비록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교육계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계의 대응 외에도 범사회적 문제 인식과 대응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의 무고성,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일종의 사후 조치에 관련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못지않게 예방 조치 차원의 구조적, 중장기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의 '매우 특별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한 아이의 성장은 학교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둘러싼 수많은 맥락 속에서 아이는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길러진 사회성, 정서적 감수성, 행복한 삶과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우리의 교육적 과업은 구성원들의 공감과 관계 개선과 공동체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수 선생님의 발제문에서 저는 일본의 괴물 부모 현상에 대한 미국과 호주 비평가들의 분석에 주

목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괴물 부모는 저출생, 육아 부담, 잘못된 교육열과 경쟁 사회, 부부의 문제(아시아 부부들은 서로의 사랑보다는 자녀를 위해 살며,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 등 우리 사회 각 부문과 연동하며 발생하는 사태입니다. 사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예방 차원의 사전 조치를 위해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는 당국과 단체들이 나서서 범 사회적 동참과 공유에 이를 수 있는 의제 발굴 및 그 확산에 공을 들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우리의 공동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 함께 행복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실태 사례보고

1. 교사 및 학교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

가. 유형 분류 및 특징

악성 민원 사례를 ‘(1) 생활지도 관련, (2) 수업 및 평가 관련, (3) 학교폭력 등 기타 학교 업무 처리 관련, (4) 허위 사실 주장’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2.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분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유형 중 ‘(1) 생활지도 관련’과 ‘(2) 수업 및 평가 관련’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고유 임무 수행에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사례이다. 고3 학생의 학업 상담[(1)-1], 글쓰기 교육[(1)-2], 성평등 교육[(1)-3], 도난 사고 예방 교육[(1)-4.], 학급자치회 운영 및 자리배정[(1)-5.], 학교폭력 예방 교육[(1)-8.], 평가[(2)-1], 체육 활동 및 안전교육[(2)-2. (2)-3], 기초학력보장 교육[(2)-4.], 등 학생을 생활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민원을 받으면 교사는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이후의 교육활동에서 위축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3) 학교폭력 등 기타 학교 업무 처리 관련’은 교무행정(출결, 학사 운영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돌봄 및 방과후학교 등)나 각종 운영 기구(학교폭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자치 프로그램(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등) 진행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결석 일수에 대한 이의 제기[(3)-1], 알림장 확인[(3)-2], 학교폭력[(3)-3, 6],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3)-4], 돌봄 및 방과후 서비스 이용[(3)-5] 등과 관련된 악성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고 있으며, 업무 담당 교사는 교사 본연의 임무인 수업 및 생활지도에 충실하기 어려워 ‘교사로서의 정체성 혼란’이라는 또 다른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다.

‘(4) 허위 사실 주장’은 일방적으로 학생의 말만 듣는 등 민원인의 단순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다. 이는 낮은 연령의 학교급, 특수학급 및 특수 학교일수록 빈도가 높게 보고되고 있다. 일어나지 않았기에 근거 또한 전혀 없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오롯이 교사에게 있다.

제기한 민원에 대한 대응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등장하는 카드가 바로 ‘아동학대’ 주장이다. ‘비고’란의 ‘아동학대 신고 위협’은 경찰이나 구청에 직접적인 아동학대 신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민원인이 교사, 학교장, 교육청 등에 아동학대라고 주장하여서 당사자인 교사가 아동학대 피신고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고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교사와 학교 관리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거나 교육청 민원, 신문고 등의 공식적인 제도를 이용하여 아동학대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공식적인 민원 신고는 담당자가 반드시 조사하여 답변을 해야 하기에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실사 조사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민원인은 학기 말이나 학생의 전학 즈음에 결국 해당 교사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정식 신고하기도 한다. 일 년 내내 지속적인 악성 민원 및 아동학대 주장에 대한 대응을 하며 시달린 교사는 실제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하고 난 이후 법적 분쟁이라는 또 다른 대응 국면을 맞이해야 한다.

나. 유형

(1) 생활지도 관련 악성 민원

〈표 1-1〉 생활지도 관련 악성 민원 사례

연번	학교급 (지역)	사례	비고
1	중등 (경기)	휴대폰 사용으로 하루 수면 시간이 4-5시간이라는 고3 학생에게 하루 7시간은 자라고 조언함. 이후 학교운영위원인 보호자가 교장실로 담임을 불러 사생활 침해라고 화를 냄. 학생 이름과 성을 붙여 부르고 출결 서류를 제출하러 앞으로 나오라고 한 이후 보호자가 전화하여 “성을 붙여 부르는 건 친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교사가 다가갈 것이지 왜 애 보고 나오라고 하냐”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20여 분 넘게 교사에게 소리치며 화를 냄.	
2	초등 (서울)	학생들과 편지 주고받기 노트 활동에서 교사의 답장글을 보고 역겹다고 전체 공개(학생도 가입됨) 클래스팅에 올림. 관리자와 논의 후 문자 차단 및 학급 클래스팅을 폐쇄했으나 매일 아이 알림장에 독설, 욕을 퍼부음. 주말에 교사와 연락이 안된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함.	

3	초등 (전북)	여학생이 남학생들에게 성희롱 욕설을 당했다고 담임에게 신고. 교사는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은 무서운 범죄라고 설명하였더니 남학생 보호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했다며 담임교사 교체, 공개 사과문 요구. 이에 교감은 사과 증용. 이후 보호자는 다시 교사에게 휴직을 요구하며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교육청에 신고	아동학대 신고 위협
4	초등 (경기)	친구의 물건을 훔치고 그 친구에게 보여주며 본인 엄마가 사주었다고 함. 상담교사와 상담 중 절도를 시인함. 담임교사가 인지하여 보호자에게 전화했으나 보호자는 “아이가 갖고 싶어서 훔쳤을 뿐인데 교사가 아이를 이상한 아이로 몰고 간다.”고 항의하며 교사의 태도를 관리자에게 얘기하겠다고 함.	아동학대 신고 위협
5	초등 (전남)	수업 시간에 교사가 2-3분 정도 화장실 다녀온 것을 아동학대 중 방임에 해당한다고 신고하겠다고 함. 자신의 아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 2명과 자리를 떨어뜨려달라고 하여 반영하였으나 아예 멀리 최대한 떨어뜨려달라고 교사의 지도권을 침해함. 학급 내에서 아이들의 투표로 이뤄진 학급 임원이라는 제도를 없애라고 요구함. 자신의 아이가 학급 임원이 되지 않아 속상해한다는 것이 이유였음.	아동학대 신고 위협
6	초등 (경기)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학교와 교사를 믿지 않으며, 자신의 아이가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하니 하루 동안 우리 아이를 계속 관찰한 후 보고해달라고 요구함. 학급에 28명의 학생이 있어 특정 아동만 하루 종일 관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차분히 안내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함.	아동학대 신고 위협
7	초등 (광주)	학생이 ‘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면, 죽은 거예요?’라고 질문하여, 교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인간은 꿈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함. 학교 직후 보호자가 교사에게 ‘꿈이 없으면 죽은 거라고 말한 게 맞냐’ 며 전화하고 답변도 듣지 않고 정서적 학대로 교육지원청에 신고함.	성과급 지급 제외 아동학대 신고 위협
8	초등 (경기)	학년 초 상담 과정에서 보호자의 자녀가 친구를 괴롭혀서 상담한 일을 (향후 예방차원으로) 전달해드리니,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미워만 한다면서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고 항의하며 장문의 문자로 담임교사에게 항의함.	아동학대 신고 위협

(2) 수업 및 평가 관련

〈표 1-2〉 수업 및 평가 관련 악성 민원 사례

연번	학교급 (지역)	사례	비고
1	중등 (울산)	수행평가 100%인 과목에서 적극적으로 수행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C 점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가 객관식 시험을 치지 않아 학생의 성적이 낮게 나오고 특목고에 못가게 되었다.”며 2학기 내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함	
2	초등 (경기)	체육 시간 게임 활동에서 졌다고 우는 학생을 달랬는데 “왜 아이를 달래냐, 우리 아이는 시간을 줘야 풀리는 아이인데 교사가 달래서 기분이 더 상했다.”고 민원 제기	
3	중등 (경북)	체육 시간 준비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발목을 접질러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하였고 학생이 크게 아프다고 하지 않아 병원에는 보내지 않음. 학생이 귀가한 후 보호자가 술을 먹고 관리자에게 1시간 이상 동안 학생의 부상에 대한 학교 측의 대처를 민원 제기하였으며, 주말에 보건교사를 응급실에 함께 대동하도록 함. 이후 지속적으로 교무부장, 보건교사, 담임에게 연락하여 모욕감을 주며 책임을 추궁함.	
4	초등 (경기)	영어전담교사가 알파벳을 모르는 4학년 학생을 수업 중 자투리 시간에 알파벳 공부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담임에게 연락하여 “우리 애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데 왜 주냐, 내가 학부모회장도 하는데 왜 알아서 잘해 주지 못하냐” 항의함.	아동학대 신고 위험
5	초등 (인천)	영어 시간 학생이 숙제를 하지 않아 교사가 지도를 하니 “내가 못하겠다는데 선생님이 왜 그러느냐. 학생 그렇게 가르치라고 배웠냐. 내가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서 선생님에게 푸는거다.”라고 흥분하여 말함. 담임이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학생이 계속 흥분하여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이야기하고 학교를 제안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담임교사와 함께 있었음. 그 후 학생을 수업시키지 않았으며 보호자가 교육청에 신고	아동학대 신고 위험

(3) 학교폭력 등 기타 학교 업무 처리 관련

〈표 1-3〉 학교폭력 등 기타 학교 업무 처리 관련 악성 민원 사례

연번	학교급 (지역)	사례	비고
1	초등 (경기)	생활기록부에 학생 결석 일수가 바르게 들어갔으며 담임교사가 구체적인 출결 날짜를 안내했음에도 교사가 잘못 입력한 것 같이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함.	

2	초등 (경기)	학생이 작성한 알림장을 보호자가 읽고 확인 표시로 서명해달라고 안내하자 “왜 알림장에 서명을 해야 하나, 알림장이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한 문서냐”며 민원을 제기함.	
3	초등 (광주)	학교폭력 사안으로 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 탓이라며 전화로 폭언을 함. 교장실, 교육청에 고발하겠다고, 학교에서 쫓아내겠다고 함. 자신의 아이가 반 분위기가 이래서 까칠해졌고 사춘기가 온 것이 교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4	초등 (전남)	전교 임원 선거에서 회장이 되지 못한 학생의 보호자가 결과에 불복하여 투표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함.	
5	초등 (경북)	돌봄교실로 잘 이동하였으나 ‘안심 알리미’(등하교 알림 문자 서비스) 기계 오류로 하교 문자가 간 학생의 보호자가 “아이가 하교했는데 담임이 모르고 있다.”며 민원 제기. 방과후 부장인 다른 교사가 민원 전화를 받고 방과후에는 돌봄교실로 가는 일을 학생이 스스로 해야 하니 담임 책임은 아니라고 답변한 이후 교육청과 신문고로 통화 내용을 왜곡하여 민원을 넣음.	아동학대 신고 위협
6	초등 (경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자 담임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며 폭언함, 학생이 한 가해 행동에 대한 반성은 없고 신고 당한 것에 대한 분노만 표출함.	아동학대 신고 위협

(4) 허위 사실 주장

〈표 1-4〉 허위 사실 주장 악성 민원 사례

연번	학교급 (지역)	사례	비고
1	초등 특수 (서울)	아토피가 있으며 스스로 손을 부딪히며 손장난을 하는 지적장애학생의 피부가 손톱으로 인해 미세하게 상처가 남. 보호자는 자꾸 학교만 가면 상처가 생긴다고 주장함.	
2	초등 특수 (경기)	지적장애 학생이 담임교사의 관심을 얻고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고 거듭 주장함. 피해 증거도 없으며 평소 장애 특성상 거짓말을 자주 하는 학생이었음.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모두 수십 차례 조사하였으나 무고함이 밝혀짐. 보호자는 학생의 말만 믿고 학교폭력으로 상대학생들을 처벌해주지 않는다며 밤, 낮, 휴일 전화하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폭언함.	
3	초등 (서울)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먹이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함. 실제로 그런 일은 없으며 오히려 교사는 우유를 하루 지나면 바로 폐기하라고 지속적으로 지도했음. 알림장에도 써놓았음	아동학대 신고 위협
4	초등 특수 (서울)	초3인데 앞니가 흔들린다고 어떻게 학교에서 이가 흔들리게 할 수 있냐고 따짐. 보건실에서 유치가 흔들린다 해도 믿지 않음.	아동학대 신고 위협

2.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가. 유형 분류 및 특징

교사노조연맹은 2023년 3월 17일~31일(14일) 동안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를 수집하였다. 각 사례들을 앞선 '1. 교사 및 학교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과 마찬가지로 '(1) 생활지도 관련, (2) 수업 및 평가 관련, (3) 학교폭력 등 기타 학교 업무 처리 관련, (4) 허위 사실 주장'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2023년 3월 기준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사안을 '결과' 란에 밝혀두었다.

2021년 동안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37,605건 중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등의 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16,096건(42.8%)이었다. 고소·고발이 진행된 경우는 13,761건(85.5%) 이었고, 고소·고발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2,335건(14.5%)이었다.¹⁾

전체 고소·고발이 진행된 16,096건 중 수사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7,181건을 제외하고 판결이 완료된 사건은 총 8,915건이다. 판결이 완료된 사건 중 경찰 종결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은 1,335건으로 고소 고발된 사건 중 14.9%에 해당한다.

매년 발간되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통해서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처분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을 도출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교사노조는 2023년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여 전달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 간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수사가 개시된 건수(총 1,252건) 대비 경찰 종결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수(676건) 비율이 53.9%에 달한다는 것을 추정해 냈다.

〈표 1-5〉 아동학대 사건 처리 결과 비교²⁾

사건 처리 \ 신고 대상	전체 (2021년)	교사 (‘18~22 5년 평균)
조사 및 수사 개시	8,915	250*
경찰 종결 및 불기소	1,335	135
비율 (%)	14.9	53.9

출처: 황봄이, "아동학대 처벌법과 위기의 학교"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전망 확보' 국회 토론회 자료집(2023. 4. 24)

1)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 통계(2022), 42면.

2)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관련 처리 건수는 연도별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최근 5년간 발생 수(1,252건)의 연평균치(250건)를 적용함

결과적으로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에서 경찰 종결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은 비율(14.9%)에 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경찰 종결 및 불기소 처분 비율(53.9%)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만큼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아동복지법 상의 정서적 아동학대, 방임 아동학대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악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대부분 무혐의 종결된 아래 사례들은 심각한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나 징계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행위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후술 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들이 이전의 '1. 교사 및 학교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에서의 민원 원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 유형

(1) 생활지도 관련

〈표 1-6〉 생활지도 관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

연번	학교급 (지역)	사례	결과
1	유치원 (경기)	유아가 먹지 않겠다는 간식의 포장지를 뜯어주지 않았다고 보호자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함.	무혐의 통보
2	초등 (경기)	1인 1역에서 힘든 것을 시켰다. 알림장 확인을 안 해줬다. 전학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 편지를 보는 앞에서 안 읽었다. 인사를 제대로 안 받아줬다. 선생님이 아이를 이쁘하지 않으니 다른 아이들도 같이 무시한다. 등의 이유로 폭언 교육청 민원 후 치료비와 이사비 요구, 불응하니 아동학대로 신고함.	경찰 조사중
3	초등 (경북)	지속적 지도에도 변화가 없는 학생에게 장난스런 용어 사용 이후 보호자가 아동학대 신고 및 교사 사과발언을 본인 SNS 라이브 방송 및 학교 앞 대형스피커를 통해 반복해서 틀어놓고 합의금을 요구함.	무혐의 통보
4	초등 (경기)	교사가 학생들 출세우는 과정에서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보호자는 인터넷에 알리고, 경찰 및 인권위에 아동학대로 신고함.	무혐의 통보
5	초등 (경기)	관내 무인문구점 절도사건으로 인근 학교에 협조 공문요청 되었고 누군가 해당 반 아이를 지목하여 경찰에 의심 신고하였으나 해당 아이가 절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그에 화가 난 해당 아이 부모가 아이가 그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함.	무혐의 통보
6	중등 (광주)	A학생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 복도에서 지도 중 학생이 자리를 이탈하려 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았는데 학교폭력, 아동학대로 신고. A학생 지도 불이행 관련 상담한 학생부장,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함.	무혐의 통보

(2) 수업 및 평가 관련

〈표 1-7〉 수업 및 평가 관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

연번	학교급 (지역)	사례	결과
1	초등 (충북)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부름. 핸드폰을 사용 여부를 묻자 인정하여 앞으로는 교실 벽걸이 시계를 보라고 지도함. 쉬는 시간에 학생이 아동학대로 신고함.	무혐의 통보
2	초등 특수 (부산)	학생은 단답형의 대답만 겨우 하는 장애아이며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짧은 명령어로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며 동물 취급을 한다는 근거로 아동학대라 주장. 보호자가 학생 옷에 녹음기를 숨겨 녹취. 녹취 내용 중 '앉아' '그만해' '하지 마' 등의 명령어를 두고 자기 아이가 개냐며 조근조근 설명해줘야 하는데 동물 취급을 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함.	무혐의 통보

(3) 학교폭력 등 기타 학교 업무 처리 관련

〈표 1-8〉 학교폭력 등 기타 학교 업무 관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

연번	학교급 (지역)	사례	결과
1	초등 (경기)	학폭 발생, 교사에게 피해를 방관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	진행중
2	초등 (인천)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녀에 대한 학교와 옆 반 담임교사의 업무 진행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성인 남녀 2인을 대동하고 학교에 무단침입 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함. 피해 교사가 보호자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형사고소를 하자 앙심을 품은 보호자는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함.	무혐의 통보
3	초등 (전북)	점심 시간에 교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두 학생이 놀다가 갑자기 싸움. 피해자 보호자가 해당 교사 신고	불기소
4	초등 (경기)	학생A가 A가 B에게 사납게 달려들어 교사가 A의 팔을 잡고 말림. A가 원치 않는데 강한 힘으로 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진행중
5	중등 (부산)	보호자가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특정하였다며 접근금지와 함께 아동학대로 신고	소송 진행중
6	초등 (부산)	교사가 학생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사과하게 했다고 정서학대라고 주장 (하지만 사과를 시킨 적도 없음)하여 경찰에 아동의 정서학대로 신고	무혐의 통보

7	초등 (부산)	학생A는 학생B 따돌림, 수업 방해와 교사 교육 불응, 담임 교사 가족 사진 무단 배포 등의 행동을 하여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함. 그 후 교육청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문의가 있었고 학교로 아동학대(정서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오니 교감이 관할경찰서로 교사를 신고함	무혐의 통보
8	초등 (대구)	학생A의 보호자가 다른반 학생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학폭 절차 상 학생A에게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다음날까지 가지고 오라고 함. 이를 심리적 압박이라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교사가 사과하지 않자 학교를 통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	무혐의 통보
9	초등 (부산)	학폭 5호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가 학생의 말을 무시한다며, 정서학대로 교육청 민원 제기, 이 보호자는 다른 교사에게도 정서학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장이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로 신고함	무혐의 통보
10	중등 (부산)	5월 A,B 간 쌍방 학폭신고. 4월 A의 담임교사가 학교 교지에 A를 칭찬한 글을 5월에 B보호자가 알게 됨. 그 후 A의 담임교사에게 학생B를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했다며 아동학대 주장	진행중
11	초등 (경기)	이름으로 친구를 놀리는 학생 지도 후 교사가 따돌림을 주도한다고 왜곡하여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학생 태블릿 pc를 리부팅 시켜주지 않았다고 아동학대로 신고 미술시간 휴대폰 와이파이를 설정해주지 않았다고 아동학대로 신고 옆자리 학생의 의자를 빼서 넘어뜨림. 교사는 피해학생 치료, 가해학생 지도를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아무 조치 없었다며 피해학생 측이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 교과서 없는 학생 지도 시 사용하지도 않은 표현을 문제 삼아 신고	무혐의 통보
12	초등 (서울)	전교 임원 선거 전에 선물(초콜릿)을 돌리고 보호자가 개입하여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이 드러나 당선 무효 처리. 이후 보호자가 학교에 매일 와서 행패를 부리고 거짓 내용을 맘카페에 수시로 올림. 보호자는 관리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수십 건의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학교 행정을 마비시킴.	진행중
13	초등 (대전)	보호자A의 등교 중 녹음을 교권침해로 불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보호자A가 교사 B가 수업 중에 학생들의 공책을 집어던졌다, 칠판지우개를 학생들에게 집어던졌다는 발언을 했고, 이를 인지한 학교장이 교사 B를 교육청에 아동학대 신고	무혐의 통보

(4) 허위 사실 주장

〈표 1-9〉 허위 사실 주장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

연번	학교급 (지역)	사례	결과
1	초등 특수 (경기)	가정에서 특수학생이 선생님이 자신의 떡살을 잡았다고 함. 보호자는 옷이 늘어난 것 같아 학생의 말을 신뢰하고 교사 교체 요구, 학교는 즉시 교사 교체, 교감이 증거도 없이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함.	무혐의 종결
2	초등 (광주)	교사에게 험담으로 지도 받은 후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본인의 동의를 받고 하교 시간에 잠시 만나 타이름. 그 후 보호자가 원치 않은 만남을 하였고, 목을 조르고 협박을 하는 등 2차가해를 했다며 교사를 교육지원청 학생인원구제센터에 신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후에도 아동학대 신고, 인권위 민원, 교육청 감사신청, 악의적인 기사 제보 등이 이어짐.	경찰 무혐의 검찰 진행중 교육청 경정계

■ 부록 2 -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글

밤 9시 21분에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pd수첩을 보고 있느냐는 거였다.

보장된 진로를 걷어찬 채

선생을 하겠다고,

전국에서 단 한 명의 교사를 뽑는다면 그게 내가 되면 될 일이라며

부모님의 만류를 뒤로 하고 호기롭게 들어선 길이었다.

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게 너무 가치 있어 보여서 어쩔 줄을 몰랐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출근길에 차에 치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무렵, 처음 면직을 생각했다.

- 엄마, 쉽지가 않다. 우리 반 애가 또 이랬어. 근데 부모가 연락이 안 돼. 부모가 연락을 안 받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엄마는 아마

출근하기가 싫고, 피곤하고, 면상을 맞대는 인간마다 신물이 나는 게 돈 버는 일의 숙명인데 뭐 어찌겠니 하셨겠지.

- 그래도 보람이 있잖아, 방학도 있잖아, 연금도 나오겠지. 아마도 나오지 않겠니.

엄마는 산산조각 난 사금파리 더미에서도 보석을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 못 미치는 딸이라 산산조각 난 꿈이 서러울 뿐인 게 문제였다.

그런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밤 아홉 시가 넘어서.

밤 아홉 시는 아주 상징적인 시간이다.

반드시,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만 할 어떤 것을 내포한다.

- 미친 것들 아니냐, 저릴 거면 학교는 왜 보낸다니, 집에서 감싸고 키우지.

엄마는 보기 드물게 분통을 터뜨리셨다.

엄마,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말주변이 너무 없었나.

불안이 너무 높아서 삶 내내 극도의 안정을 추구해 온 딸이, 마침내 이 일을 때려치우고 싶다며 내질렀던 그 모든 절규는 순간의 투정이었나, 어스름이었나, 안개였나, 그 무엇도 아니었나.

엄마는 그제야 말씀하셨다.

- 전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알아봐.

그리고 덧붙이셨다.

- 그냥 애들 비위 맞춰주면서 지내고.

나는 엄마의 마지막 말에 속으로 비명을 내질렀지만

그와 함께 비로소 부모님의 이해를 얻었다.

이 카드는 이직 욕구가 습관처럼 치밀 때 유용하게 쓰일 거다.

출근을 앞둔 날이면 가끔 잠이 오지 않아 시간을 질경질경 씹는다.

그때 자퇴를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수능을 망쳤더라면.

다른 꿈을 가졌더라면.

그때 그 수많은 은사님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을, 어찌하지 못할 때까지 곱씹다가

그 모든 가정을 뭉개고 짓이겨 튼 뺨어낸 후에야 겨우 잠이 든다.

뺨어낸 시간 속에는 열정 넘치던 시절도 있다.

한때는 방과 후에 모든 아이들과 돌아가며 상담을 했다.

하루종일 나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교하는 몇몇 아이들이 눈에 밝힌 탓이었다.

학교 생활에 힘든 점은 없는지, 요즘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수업은 잘 알아듣고 있는지,

요즘 최애는 누구이고 그때 일기에 썼던 그 앨범은 무사히 잘 샀는지,

뭐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옆 반 선생님은 내 개인상담활동을 '굳어 부스럼'이라고 정의하셨다.
그렇게 판을 깔아주면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였다.

어느 날은 교직원 회의에 조금 늦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선배 선생님들의 말씀에 나는

아직 구구단을 못 하는 아이가 있어서 남겨서 좀 시켰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때 손사래를 치며 “아유, 남기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집에 보내. 어차피 안 돼.” 하던 선생님
들을 보며

한결같이 패배주의적이던 그 태도에 진절머리가 나서

나는 당신들처럼 나이 먹진 않을 거다.

하고 속으로 코웃음을 날리며

- 아유, 그리고 싫은데 4학년이라 구구단 정도는 해야 할 거 같아서요.

하고 어색한 변명을 덧붙였다.

그랬는데

그랬었는데.

언제부터였나,

아이들 사진을 올려줬더니 우리 아이 표정이 안 좋다, 우리 아이 사진이 별로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부터였나,

학교에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쓰발니이 되어버린 옆 반 선생님 소식을
들은 날부터였나.

숙제를 안 해온 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1교시부터 쫓아와 “너 몇 살이야, 너 애 낳아봤어?”
하며 학교를 뒤집어놓은 그 학부모를 봤을 때부터였나,

욕을 한 아이를 교실에 남겨 지도한 죄로 아동학대범이 된 선생님의 한숨을 들은 날부터였나.

교과서를 챙겨가야 한다고 미리 안내했음에도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애 아빠가 화가 났다, 학
교 쫓아가려던 걸 말렸다, 교무실로 전화하려다 참았다’라고 나에게 한껏 선심을 써주던 그 학부
모와의 통화부터였나.

선생님, 우리 애가 오늘 늦을 거 같은데, 숙제를 못해가는데, 준비물을 못 가져가는데, 어쨌든
혼날 짓을 하긴 했는데 혼내지 말아 주세요. 하는 문자가 익숙해질 무렵이었나,

생활통지표에 모든 부정적인 피드백이 금지되다시피 해서 ‘말대꾸를 하며 대드는’ 아이를 두고
‘자기주장이 확고하다’며 글짓기를 할 때부터였나,

'노력 요함'이라는 표현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다른 표현으로 고쳐보자는 게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던 날이었나,

그럼에도 나는 교원평가라는 명목 하에 익명에 가려진 막말을 받아내야 하던 때부터였다.

나는 짝이고 짝이다가

드디어 이 모든 일에 대처하는 법을 터득했다.

교육활동사진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난 스무 명이 동시에 활짝 웃는 사진을 찍을 재주가 없으니까.

함박눈이 오지만, 이제 운동장에서 눈사람은 만들지 않는다. 교육과정에도 없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기본기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남겨서 지도하지 않는다.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

일기도 쓰지 말아야 한다. 일기를 읽고 댓글을 써 주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지만 그건 사생활 침해니까.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랄 수 없고, 혼자 남겨서 지도를 해도 안 되며, 반성문은 어렵도 없고, 교과시간에 잠시 붙잡고 있어도 안 된다니, 그냥 두자.

틀렸다고 사선을 짝 그으면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진다니까 별표로 해볼까? 그럼 좀 낫나.

근데. 틀린 걸. 틀렸다고 하지. 어찌란 거지?

때로 솟구치는 의문과 분노를 잠재우면서

난 정해진 수업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생이 되기로 했다.

모든 게 함정수사의 구덩이 같은 이 지옥에서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세상은 나를 사명감 없는 선생이라고 혀를 끌끌 차겠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이 시대 선생의 본분이다.

나에게는 교과서를 찢고 친구를 때리고

수업시간에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규칙을 어기는 아이를 칭찬만으로 교육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 모든 말과 행동은 잠재적으로 학대가 될 수 있는데

나에겐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지도할 권한이 없으니까.

나는 없는 권한을 쥐고 사명감을 불태울 만큼 용감하지도, 명청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이토록 무심한 담임의 교실은

우습게도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간다.

계절마다의 특별한 과외 활동이나 매일 수다를 떨듯 이어가던 일기 검사,

하교 후에 제티 한 잔을 타 주면서 나누던 학교생활 상담,
남아서 머리를 싸맨 채 보충학습지를 푼 아이에게 마이썬 하나 건네주며 “다른 친구들한테 비
밀이야!” 할 때 빙그레 웃는 학생의 모습같이
내가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의 모든 이유가 사라졌지만
처참하게도 나는 충실한 선생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전히 철마다,
우리는 교직의 고점을 잡았어. 누칼협이라잖니. 투자를 잘못된 거지, 하는 자조적인 농담이나
하면서.

킬킬대면서
해답도 열정도 없이 그럭저럭 산다.
이렇게나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 가끔은
선생님 교실은 어쩔 몇 년째 별 탈이 없냐며 칭찬도 듣는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학부모를 만날 때까지는 이 일을 계속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떤 권한도,
아무 보호막도 없으면서
겨우 ‘학부모 세금이나 받아먹고사는’ 주제에
감히 교육을 꿈꾸는 교사는
언젠가 추락할지도 모르겠다.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더 해주겠다고,
뭐 얼마나 엄청난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아이들을 주렁주렁 열기구에 태우고 오르는 교사는
어쩌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프게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내 얘기는 아닐 거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아무 문제도 없는 선생이 됐으니까.

-인디스쿨에서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글-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